

사 업 명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	30	30	4,548	3,800	3,770	12,56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
- (선상투표관리) (사전)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시스템 구축
- (계도홍보) 공명선거 문화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 (위법행위 예방단속)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신고제도·조사단속 등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인력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 및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심의·조치
- (정책선거추진)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 홍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2024년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그 사무국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77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제1대~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
- '18년 9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 '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채택·제출
- '22년 9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예정)
- '22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예정)
- '23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선거구획정 지연 시 최대 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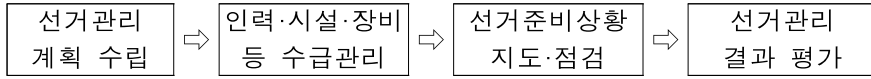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696	226,745	-	30	3,8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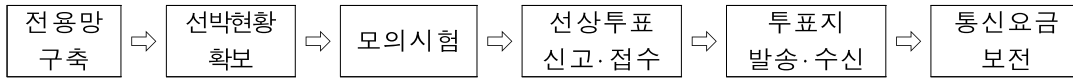
3)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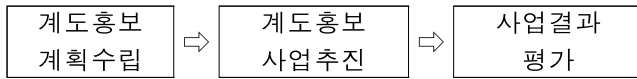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선상투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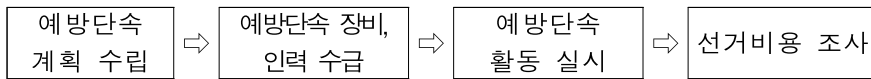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계도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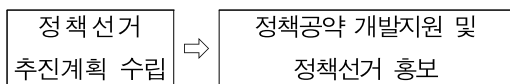


(위법행위 예방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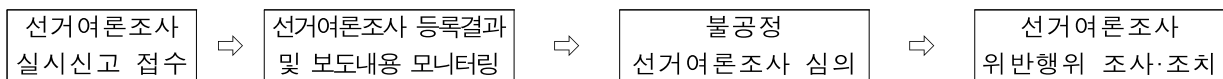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

(정책선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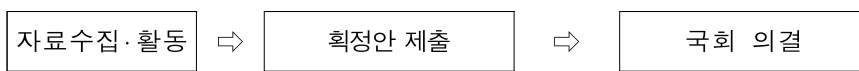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선거여론조사심의)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사 업 명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재보궐선거관리	156	2,405	2,405	1,564	1,394	△1,011	△4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
- (선거운동관리)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
- (사전투표관리)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시스템 구축·운영
- (투표관리) 원활한 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표사무 수행인력, 투표소 설비·운영

- (개표관리) 원활한 개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개표사무 수행인력, 개표소 설비 등
- (계도홍보) 공명선거 문화 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 (위법행위 예방단속)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신고제보·조사단속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영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이용내역 조사 및 선거비용 보전금액 신청에 대한 실사 및 결정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각종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조치
- (선거방송토론관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정당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
- (선거여론조사심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심의·조치
- (당내경선)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지원
- (정책선거)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
- (보전경비)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일정조건에 따라 선거일 후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277조
- ② 추진경위 : 재보궐사유발생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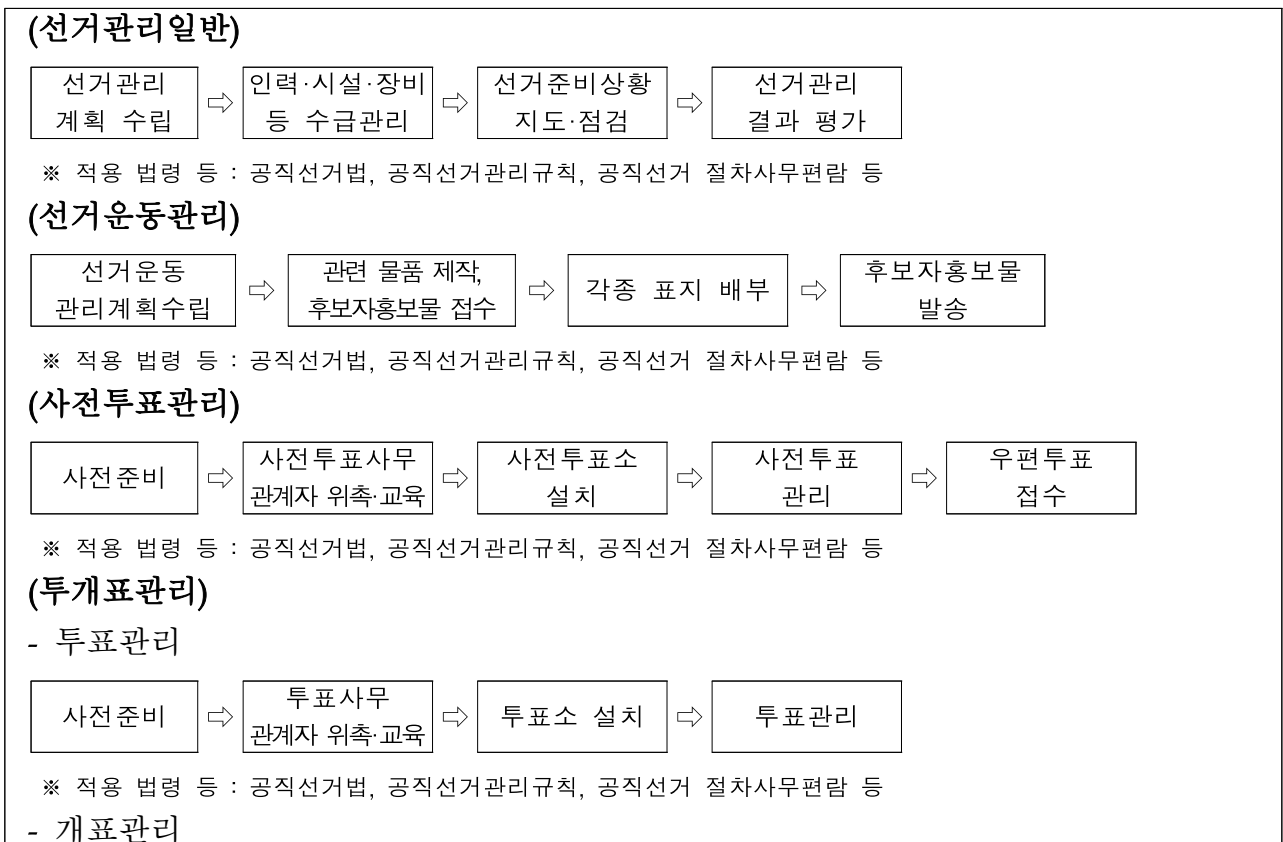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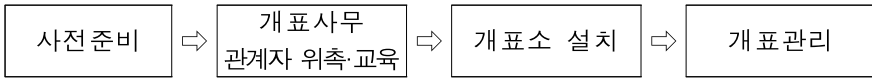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00	-	170	2,405	1,3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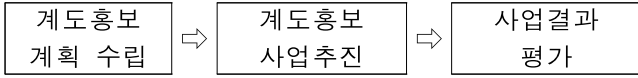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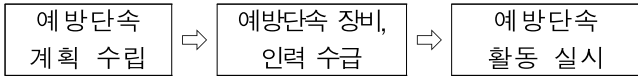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계도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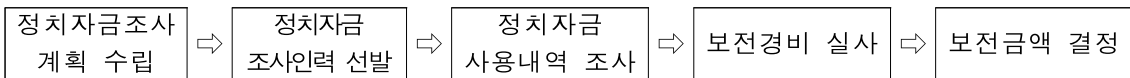


(위법행위 예방단속)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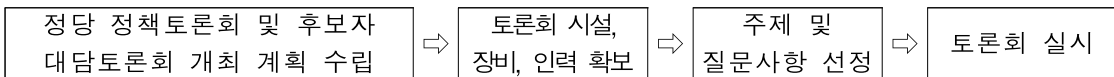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

(인터넷선거제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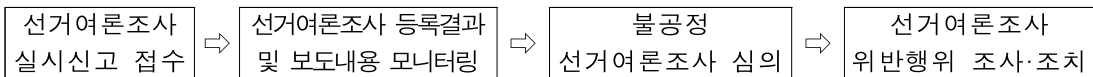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선거방송토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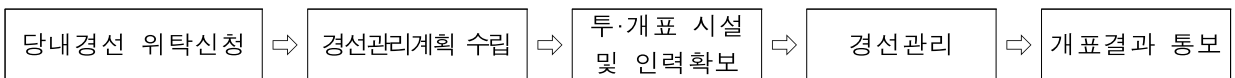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등

(선거여론조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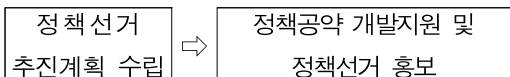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

(당내경선)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

(정책선거)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사 업 명
재외선거관리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재외선거관리	10,366	7,173	7,173	9,703	7,707	534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및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
- (재외선거 제도·홍보)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홍보
- (재외선거 예방·단속) 재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재외선거 인력운영) 재외선거관 파견에 따른 업무·체재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09. 2. 12.)
- 재외선거 실시
 - 국회의원선거 : 제19대(2012), 제20대(2016), 제21대(2020)
 - 대통령 선거 : 제18대(2012), 제19대(2017), 제20대(20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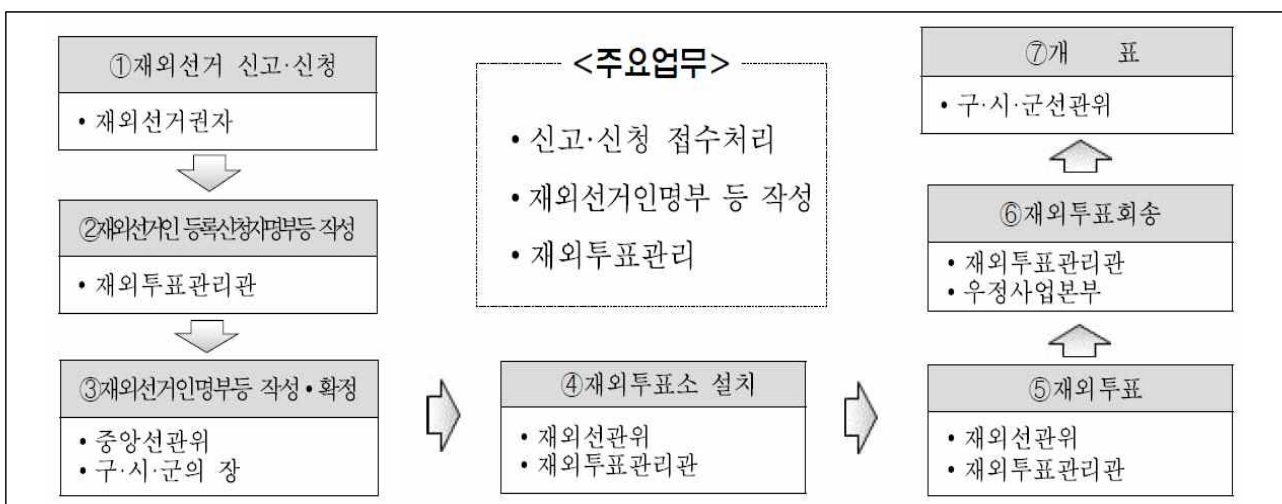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671	8,428	10,687	7,173	7,7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사업 수혜자 : 재외선거권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위탁선거관리 (1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6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위탁선거관리	114	226	226	1,233	501	275	12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관리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민투표법 제3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② 추진경위

- '05년 농·축·수·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11년부터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추진 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 위탁관리
- '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임원선거 지원
- '1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관리
- '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단체등 선거 위탁관리
- '15년부터 농(축협 포함)·수·산림조합선거 동시 실시
- '17. 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정부 100대 국정과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공단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단체의 위탁신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진행

사 업 명
선거장비및물품관리 (11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9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장비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장비및물품관리	4,294	2,485	2,485	88,143	36,075	33,590	1,35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장비관리) 선거장비 제작 및 효율적인 보관·관리
- (선거물품관리) 선거물품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277조
- ② 추진경위
 - 제1대~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통합 보관 및 유지보수 실시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후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물품 통합보관 실시
 - 예산부족으로 전국 17개 시·도위원회 중 12개 시·도위원회에 한하여 선거물품 통합 보관 실시중(2022. 현재)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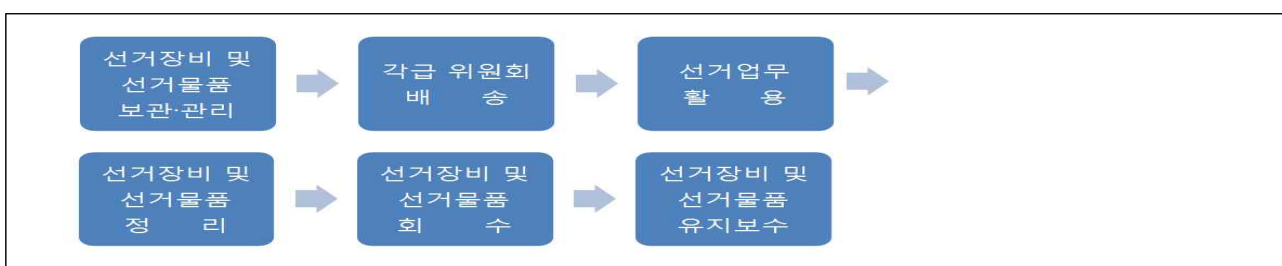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선거장비 제작의 경우 2023~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485	2,485	4,737	2,485	36,0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당사무지원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사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당사무지원	71	266	266	819	239	△27	△1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정당·후원회 등록 등 빈틈없는 법정사무관리를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등 정당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정당 발전을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 정치제도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당 활동 및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② 추진경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지원 >

- 정당·후원회 등록사무처리 및 회계사무 지원, 정당·후원회의 활동상황 공개

< 정당발전세미나 및 연수회 >

- '78년 선진국의 정당, 의회 및 선거관리기관 등 견학 시작
- '05년 시·도당 간부에게도 연수기회 부여
- '07년 연수대상국가를 선진지 위주로 확대 실시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 '77년부터 정당발전과 공명선거실천방안 등 협의 실시
- '97년부터 업무협의회 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하여 실시
- 2004. 3. 12. 신설된 (구)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기능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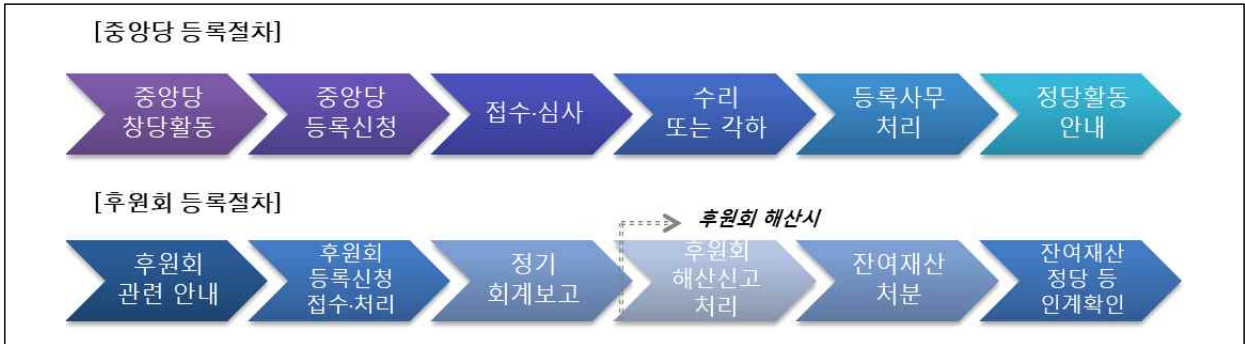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345	109	290	266	2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당보조금 (11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보조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당보조금	46,278	143,239	143,239	47,734	47,734	△95,505	△6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의 건전한 발전·육성을 위해 정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정당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② 추진경위

- ('81.)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법정경비 도입
- ('06. 8. 4.) 여성추천보조금 도입
- ('08. 2. 29.) 선거보조금 신설
- ('10. 1. 25.) 장애인추천보조금 도입
- ('22. 2. 22.) 청년추천보조금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3,406	90,812	46,282	143,239	47,7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 사업 수혜자 : 정당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당보조금	보조	더불어민주당	47,734	100	정치자금법 제25조 ~ 제27조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급준비	중앙위원회	국회 및 정당에 의석수 조회·확인
② 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위원회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대상 정당별로 배분·지급
③ 보조금 지급 통지·공고	중앙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공고 및 당해 정당에 통지
④ 보조금 지출내역 확인조사	중앙위원회	정당 등의 회계보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⑤ 보조금 반환 및 국고귀속	중앙위원회	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시 보조금 지출내역과 그 잔액을 반환토록 조치(미반환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

사 업 명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133-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2,252	3,147	2,900	2,832	2,414	△733	△2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숙한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선거·정치분야 유권자, 미래유권자 등 연수
- 국제심포지엄,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등 선거정치교육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및 제14조(선거제도), 제15조의2(선거연수원),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교육·연수방침)

② 추진경위

- '00년 정치교육과 신설
- '06년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
- '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강화
- '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 '18년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정 확대·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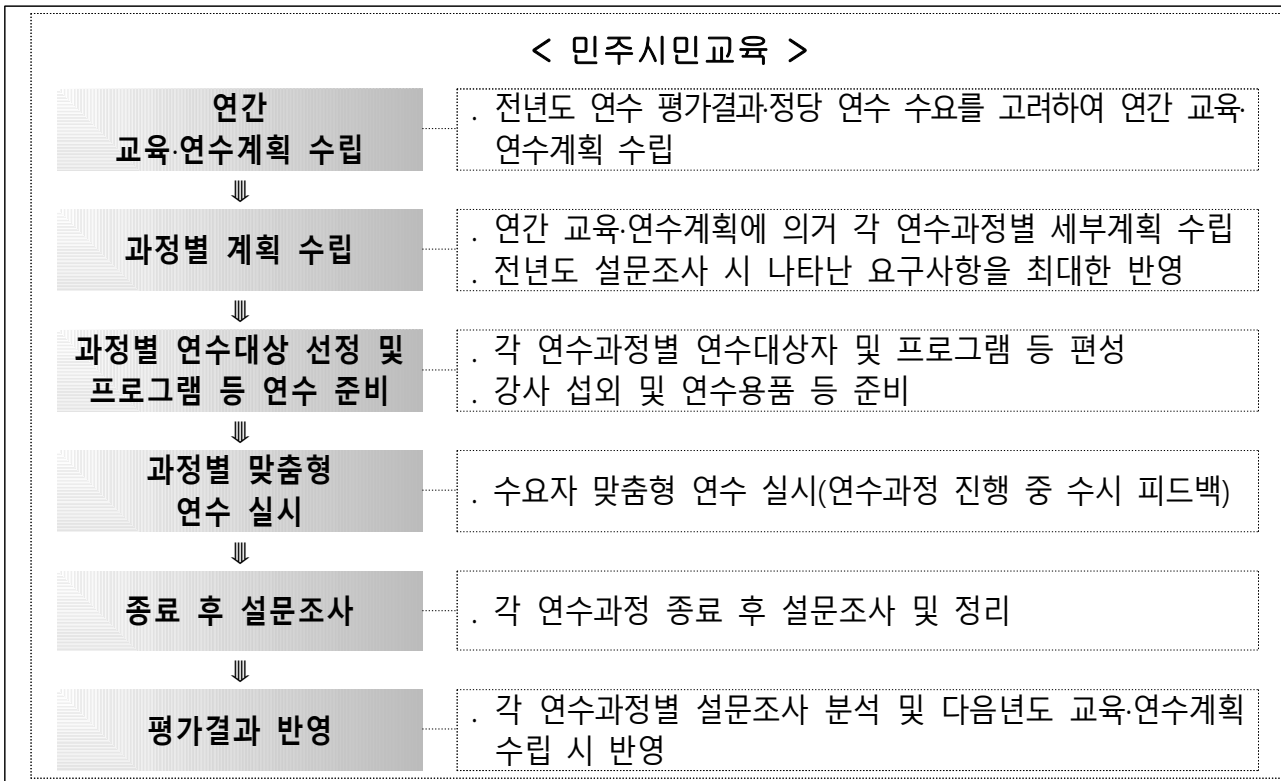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3,623	3,121	3,521	2,900	2,4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교육및연구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26	1,474	1,474	1,830	1,474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교육·연수)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산 및 위원회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유권자 및 소속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개선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직원 대상 선거관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체계 지원

- (선거·정치제도 연구) 위원회의 정책적 외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거·정치제도 분석 및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② 추진경위

- ('96. 2.) 선거연수원 설치
- ('06. 6.)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14. 8.)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 ('15. 9.)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개편
- ('16. 8.) 온라인교육포털 구축 및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 콘텐츠 개발
- ('17. 11.) 선거연수원 확대·이전
- ('19. 12.) 정치관계법규 주요 과목 교육콘텐츠 모바일용 변환
- ('20. 12.) 직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웹표준 동영상 변환·개발
- ('21. 6.) 사이버교육시스템 노후장비 고도화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221	1,313	1,357	1,474	1,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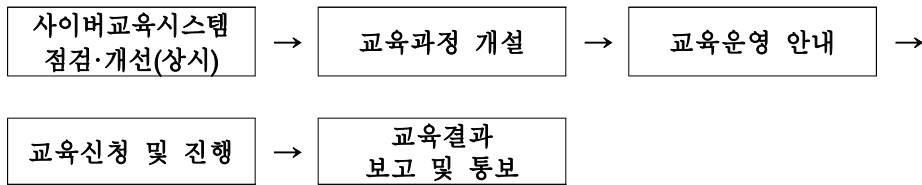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소속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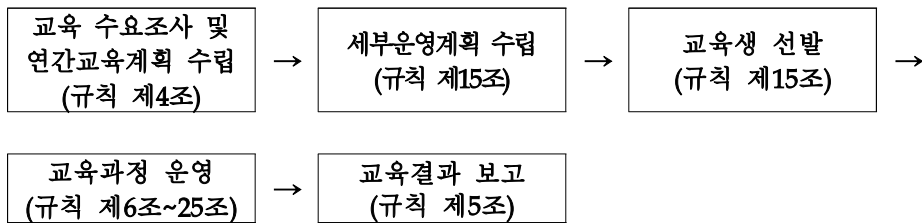
1.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사이버교육·연수)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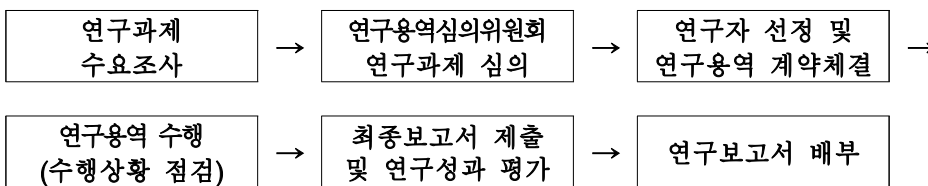
2. 직무교육과정 운영(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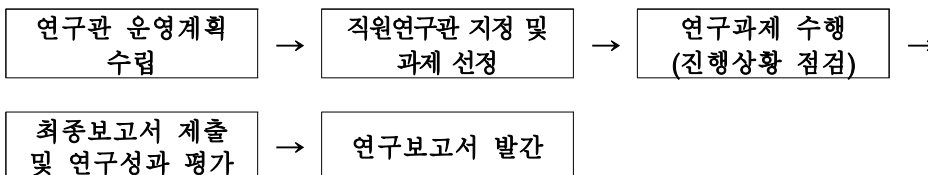
3. 연구용역 관리(선거·정치제도 연구)

※ 적용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4. 연구관 운영 및 보고서 발간(선거·정치제도 연구)

※ 적용 규정 :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사 업 명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홍보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공명선거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3,072	2,842	2,842	3,494	2,254	△588	△2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름다운 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제도 안내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미래유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
-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유권자 주간 홍보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실현수단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한국선거방송)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기반 콘텐츠 전파로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
-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제도)

-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제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

-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의 방법·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 공직선거법 개정)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의무화
- ('02. 1. 1차 직제개편) 신설된 시·도 홍보과 및 구·시·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
- ('04. 3.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
- ('05. 8.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
- ('16. 10.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재구축) 기부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20. 1.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체험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시홍보 필요
- ('21. 1. 정치자금법 개정) 후원회 지정권자 대폭 확대로 정치후원금센터 규모 개편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3,530	2,916	3,283	2,842	2,7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조사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위법행위예방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2,658	12,407	11,463	12,254	12,002	△405	△3.3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 예방·안내활동 및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위법행위예방단속) 기부행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유도
- (정치자금조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신설로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 부여(1997. 11. 4.)
-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까지 조사확대(2002. 3. 7.)
-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2004. 3. 12.)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확대(5천만 원 → 5억 원)(2006. 3. 2.)
-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 도입(2006. 5. 3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2008. 2. 29.)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설치·운영(2014. 1. 1.)
-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2016. 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8.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1,859	10,184	14,379	11,463	11,7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인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개모집 ⇨ 선발·심사 ⇨ 위촉·운영
- 광역조사팀 운영
 - 시·도별 구성 ⇨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정황 파악 ⇨ 중대선거범죄 조사·조치
- 단속직원 (위탁)교육
 - 교육계획 협의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결과통보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 포상금 심사·결정(포상금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 정치자금조사
 - 위법행위예방활동 ⇨ 회계보고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조치

사 업 명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1133-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362	574	574	412	412	△162	△2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역량강화연수

-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동반성장'을 위한 ODA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굿 거버넌스' 구축
-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지식·경험 등을 공유, 전파하여 후발 민주국가 선거관리 역량강화
-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한국의 국격 제고 등
- 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해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과정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의무)

② 추진경위

- ('06.05.) 외국선거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실시(KOICA 공동주관)

- ('12.01.) 중앙선거관위 ODA예산 편성

- ('13.10.) 중앙선거관위 주도 A-WEB 창설 및 사무처 국내 유치

- ('14.0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0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 임기만료 공직선거 실시되는 해마다 국제선거참관단 초청

(‘16 제20대 국선, ‘17 제19대 대선, ‘18 제7회 지선)

※코로나19로 ‘20 제21대 국선, ‘22 제20대 대선은 사이버 참관 실시

- ('16.01.) 중앙선거관위 보조사업으로 A-WEB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3.01.) 중앙선거관위 직접사업으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501	434	444	574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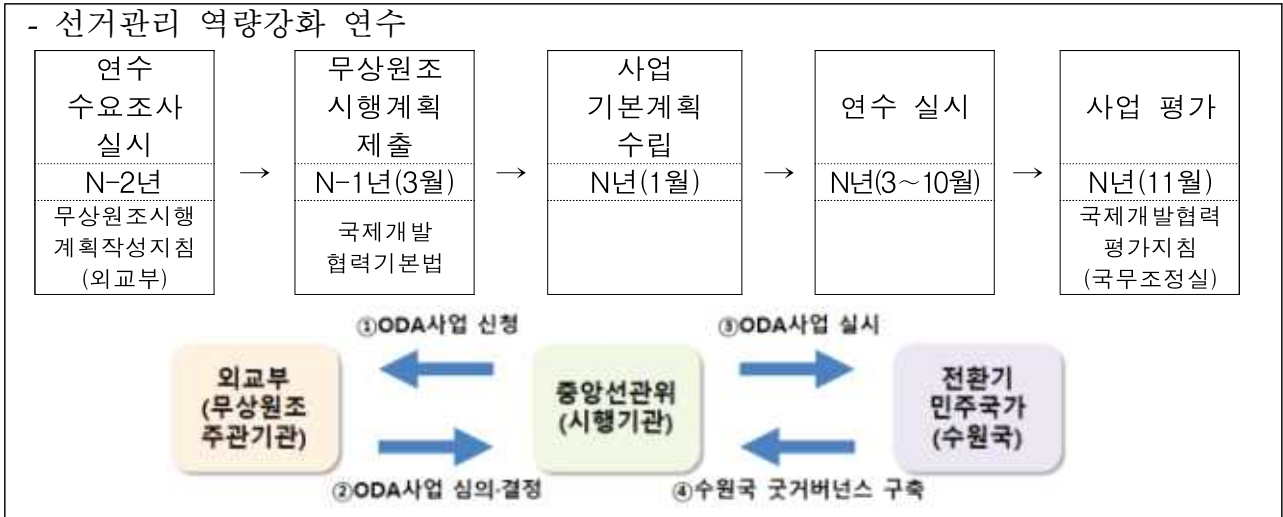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선거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인터넷선거보도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6	116	116	222	116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 불공정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운영
- (불공정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관리 및 모니터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인터넷언론사, 주요 포털사 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제정
- 2004.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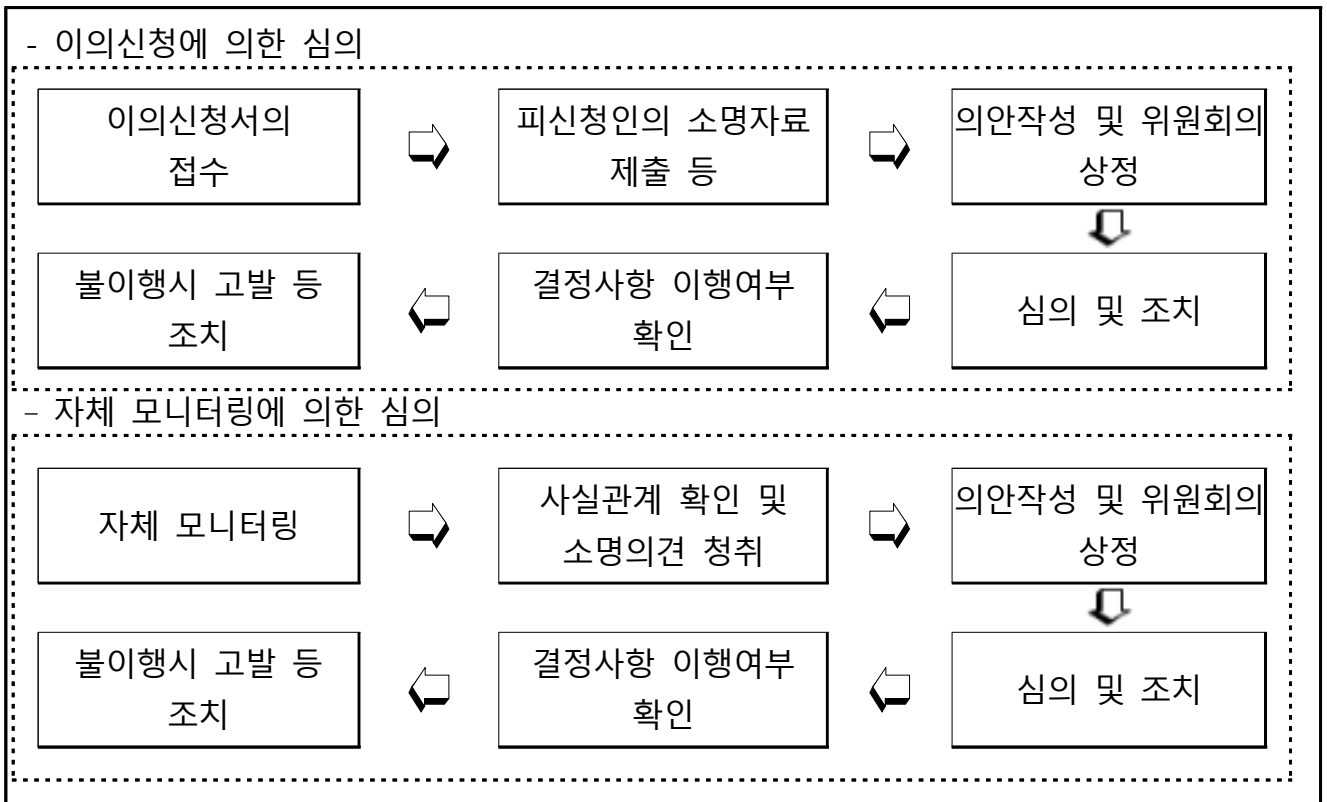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84	280	116	116	1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선거방송토론 (1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중앙선거방송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토론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방송토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방송토론	472	474	474	552	474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 운영) 동 내역사업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권자 대상 유권자토론회(민주시민 토론교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등 내역사업은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 기회 제공 및 정당 간의 정책 비교·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0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 ('05. 8.)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
- ('5. 11.)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14. 3.)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토론회 개최
- ('17. 8.) 고등학생토론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18. 9.)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대학생 및 고등학생 통합) 개최
- ('21. 11.)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온라인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06	533	489	474	4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3) 사업 집행절차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정당정책토론회	
추진절차	절차내용	추진절차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기본계획 수립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② 토론주제 공모선정	토론주제 외부 공모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선정	② 개최일·장소 등 결정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결정
↓		↓	
③ 참가팀 접수선발	사도대회를 통한 선발(고등학생부) 및 접수(대학생부)	③ 초청정당 선정	「정당법」제39조에 의한 초청 정당 선정
↓		↓	
④ 예선·본선 개최	예선·본선 개최	④ 토론주제 수집	정당 및 기관·단체 등을 통한 토론주제 수집
↓		↓	
⑤ 결승전 개최	결승전 개최	⑤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	
⑥ 결과보고	대회 결과보고 및 평가	⑥ 사회자 선정	사회자 선정
		↓	
		⑦ 질문사항 선정	질문사항 선정
		↓	
		⑧ 설명회 개최	참석자 발언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⑨ 토론회 진행	정당정책토론회 진행
		↓	
		⑩ 결과보고	정당정책토론회 결과보고 및 평가

사 업 명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중앙선거여론조사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여론조사심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여론조사심의	243	300	300	454	30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을 통해 중앙여심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언론매체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보도내용의 상시 모니터링과 심의·원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 사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를

운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관리시스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법정사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인력 육성 및 불법선거 여론조사 조사·조치를 하고 정당·언론사·선거여론조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② 추진경위

- ('1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
- ('15. 12.) 선거여론조사 신고·등록 상시화,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
- ('17.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선거여론 조사기관 등록제,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과태료 부과권 등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
- ('19. 7.)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접촉률 도입, 응답자 특성표 및 가중값 배율 등 강화
- ('21. 12.)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현실적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제고(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등을 신설·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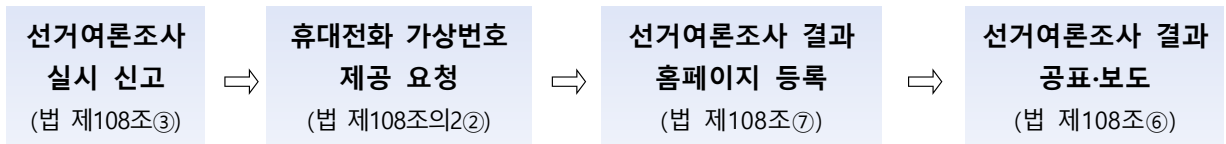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72	270	270	300	300

②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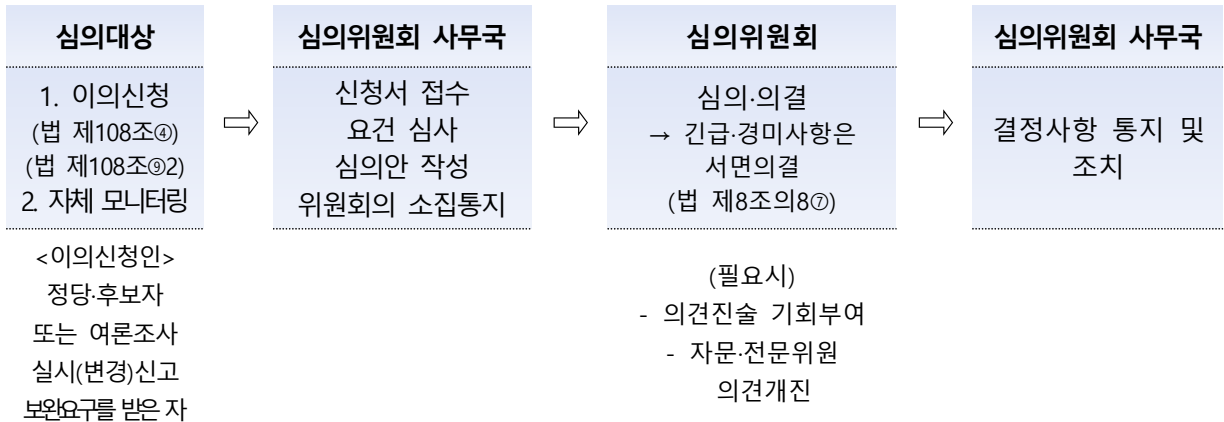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권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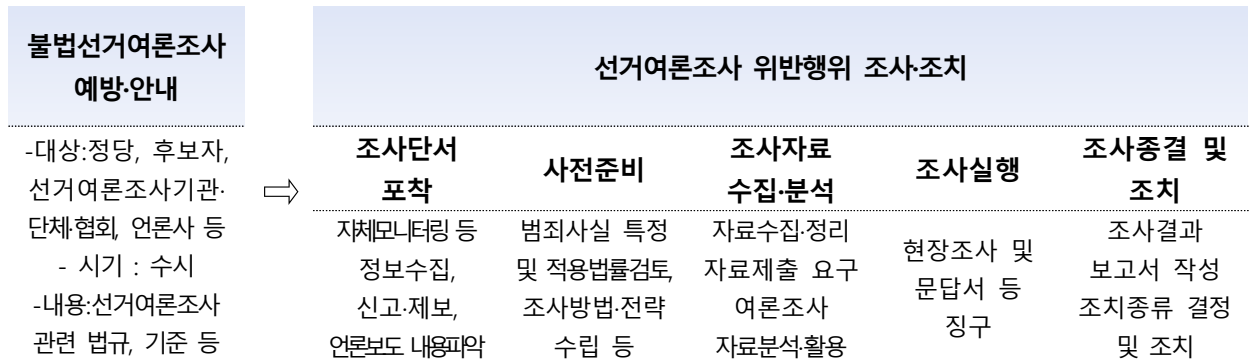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사 업 명
인건비 (7101-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인건비	203,608	216,730	216,405	231,901	216,626	△104	△0.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10,583	209,038	217,302	216,405	216,6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06	기획조정실	00	011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위원회기본경비	13,844	15,837	15,837	16,298	16,298	461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3,346	14,826	15,230	15,837	16,2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법제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1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법제지원및법규운용	377	451	451	849	497	46	1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치관계법제지원 및 행정쟁송) 국회 입법지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거·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국가·선거·행정소송,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비·대응으로 선거행정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통일적이고 신속·정확한 법규안내를 위하여 공직선거·투표·정당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맞춤형 선거안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제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법제국)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제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법제국)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76	1,004	392	451	4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 관계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①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준 비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규 개선방안 마련
↓		
② 의견 수렴	법제과	정당,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및 관련 부처 등 의견 반영
↓		
③ 의견 제출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		
④ 입법 지원	법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등 입법지원 활동(국회법 제44조)

② 행정쟁송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선거소송 제기	-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등 제기
↓		
② 소송 등 수행	위원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작성 등 사무추진
↓		
③ 피드백	위원회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반사항 관리

③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질의접수	위원회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정치관계법 질의 접수
↓		
② 질의검토	위원회	법령, 운영기준, 선례 등에 따라 질의 처리
↓		
③ 질의회신	위원회	질의자에게 질의 회신
↓		
④ 공유 및 안내	위원회	위원회, 정당, 단체 등 질의회답 공유 및 안내

사 업 명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관리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관리역량강화	627	845	845	845	803	△42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역량 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 (직원 상시학습)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상시학습 실시
- (사무능력 제고)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조직역량 강화 : 자체 시행계획
- 직원 상시학습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사무능률 제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등

② 추진경위

- ('83) 연구분임 운영 시작, 시·도위원회 책임하에 권역분임 자율적 구성·운영
- ('09) 상시학습 운영지침 제정·시행
- ('13) '제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데이터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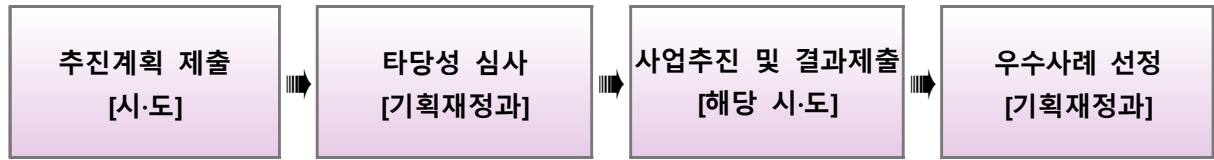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900	900	890	845	8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전문성강화 특화사업



□ 제안사무 관리 업무흐름도



사 업 명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7132-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인사과	00	010	011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시험관리 및 전문성강화	443	539	539	560	53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능력검정 및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관리) 위원회 6급 직원을 대상으로 법규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선거관리역량을 제고하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적기 인력충원 및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 (역량평가 및 제한경쟁심사승진 관리) 5급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등 실시로 승진임용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 (법규운용담당 전문교육 관리) 시·도 및 구·시·군 법규운용담당자 실무연수 실시 등을 통한 법규운용의 전문성 제고
-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로 인사·보수·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정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장(임용과 시험), 제6장(능력)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장(임용), 제3장(시험)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9년부터 5급 심사 승진임용제도가 도입되어 초급관리자로서의 사전 자격검증을 위해 매년 6급 대상 능력검정 시험실시
- '13년부터 경쟁력 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해 역량평가 제도 도입
- '16년부터 실무자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위원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제한경쟁심사승진 제도 도입
- 결원 대체 임기제공무원 및 인터넷선거보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
- '11년부터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및 경시대회 실시
- '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비용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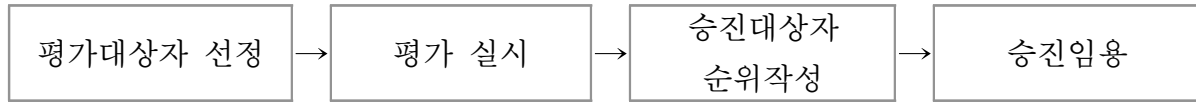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05	406	506	539	539

②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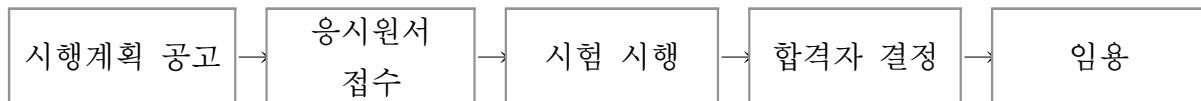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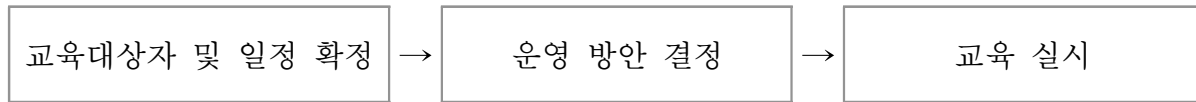
□ 능력검정시험 등



□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규운용담당 전문 교육



사 업 명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7132-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1,945	2,166	2,166	2,739	2,311	145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물관리 및 선거기록관 건립)
 - 기록물 체계적·안정적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
 -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 제고
- (선거도서관 관리 및 도서편찬)
 - 도서의 효과적인 수집·정리·보관 및 활용과 Web-DB를 통한 선거·학술자료 제공
 - 선거·정당자료의 수집, 사서편찬, 전시회 개최 등 선거역사 기록·보존·전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도서관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 규정」, 「선거 정당 기록물 수집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사·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② 추진경위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2005. 11.)
 - 기록물 및 선거행정박물 등 DB구축(2006~2021)
 - 탈산장비 및 비전자기록물 RFID시스템 도입(2020)
- (선거도서관 관리 및 도서관편찬)
 - 선거도서관 홈페이지 운영(2007. 1.~)
 - 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09) 및 Web-DB 및 전자책 서비스 개시(2013.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2019)
- 선거도서관 개관 및 RFID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20)
- 「선거·정당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2007. 11.)
- 「선거·정당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021. 2.)
- 선거·정당 행정박물자료 공개 구입(2021. 5)
- 도서편찬: 대한민국선거사(제1~7집)·정당사(제1~6집) 발간(1964~2016)
 - * '22 대한민국 선거사(제8집)·정당사(제7집) 발간 예정
- (선거기록관 건립)
 - 건축 부지 확보(2019)
 - 선거기록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2020)
 - 선거기록관 건립 국유재산관리기금 확보(2021) 및 개관(2025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417	2,194	1,966	2,166	2,3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사업명	세부내용
① 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반출 → 기록물 해철 → 기록물 보수 → 기록물 분류 → 면표시 → 기록물 정리검증 → 기록물철 색인입력 → 디지털작업(스캐닝, 인코딩) → 기록물건 색인입력 → 색인검증 → 기록물 재편철 및 제본 → 시스템 업로딩 및 서가 배치
② 행정박물관자료 구입	공모 및 접수 → 자료구입위원회 개최(선정·평가심의) → 구입 예정 자료 화상공개 → 계약 및 인수
③ 도서 편찬	편찬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 → 원고 집필 → 교열감수 → 발간배부
④ 선거기록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준비: 건축 기본실시 설계 → 착공 → 준공 → 내부설비(사설장비) → 개관 ※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 - 운영시스템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시스템 개발구축(1·2·3차) - 주요핵심사업 추진: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검색·도구 제작 및 콘텐츠 개발 등

사 업 명
국제교류협력(7132-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5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국제교류협력	850	1,108	1,108	1,108	1,045	△63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국제선거포럼) 위원회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및 관리 기법 공유를 위해 각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연례 주최
- (외국 선거참관 및 국제 교류) 각급 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각국 선거제도 비교·연구를 위한 외국 선거참관 지원, 선거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발제 지원 및 외국과의 선거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 (A-WEB 운영지원) 중앙선거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안정적 정착 및 활동·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기획국) 제2항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기획국) 제4항

④ 행정국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7.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선거물품,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원 및 직원의 한국선거제도 전파 및 비교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3.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4. 후발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
17.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와의 협력) 제1·2·3항

- 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의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A-WEB 현장 제24조(사무처 운영비)

사무처가 소재한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은 사무처의 건물 임차 및 관리, 사무처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외국 선거참관 정례화('07. 01.)
- 국제교류전문인력 선발·양성('08. 01.)
- A-WEB 창설 및 대한민국 사무처 유치('13. 10.)
- A-WEB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01.)
- 연례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시작('15. 05.)
- A-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지원('14 ~ '15)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으로 이관('16. 01.)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에서 국제교류협력(1133-345)으로 이관('20. 0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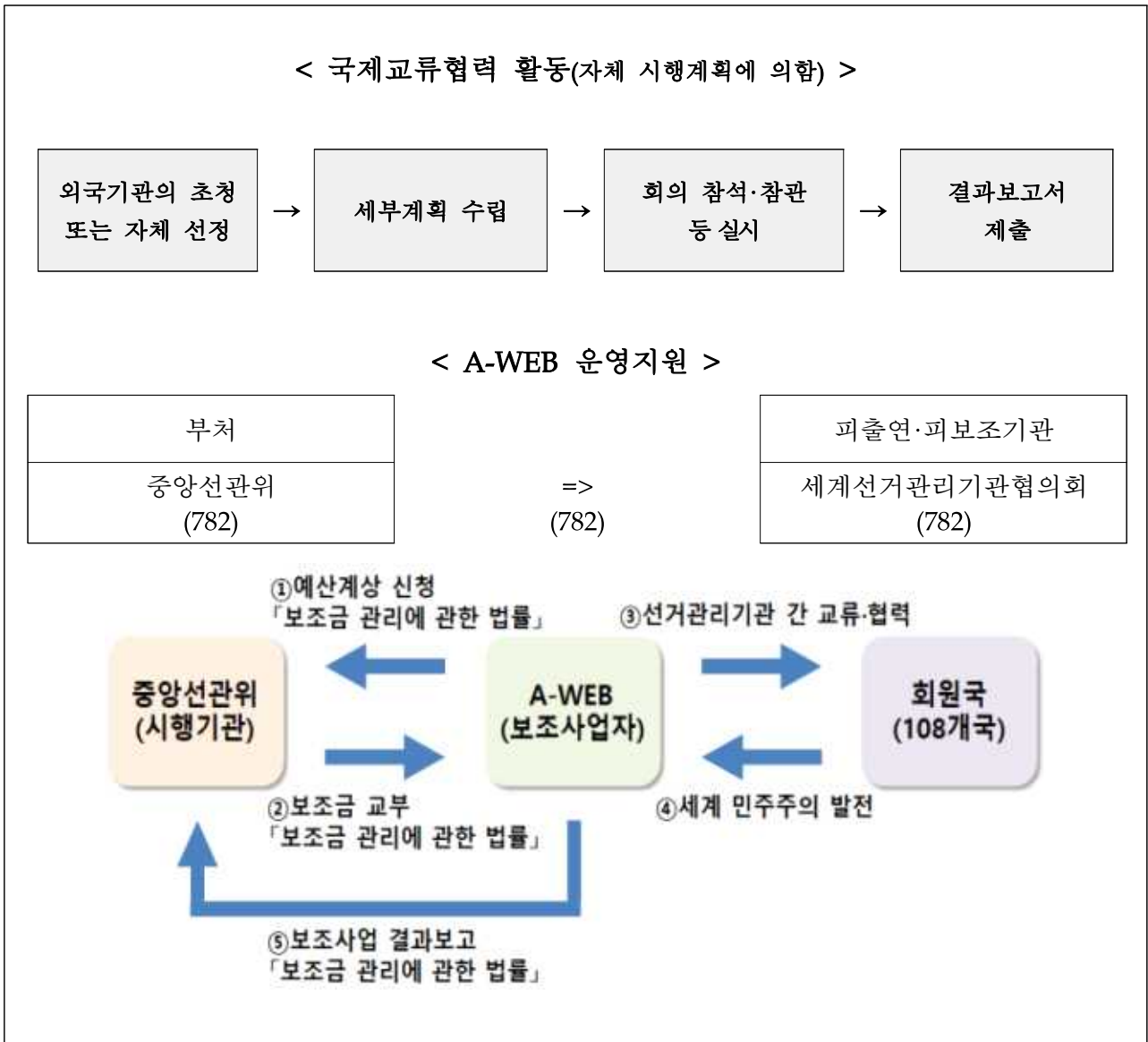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531	1,136	1,187	1,108	1,0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외국 선거기관 관계자 및 A-WEB 회원국가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WEB 운영지원	보조	세계선거 기관협의회 (A-WEB)	782	10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감사관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7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	152	180	180	500	18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사활동) 동 내역사업은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관행·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임.
- (공직윤리확립) 동 내역사업은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공개로 청렴공직 이미지를 조성하고,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종합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부분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기강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일상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감사요원 교육)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대행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직무감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병역신고 심사
- 각종 비위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
- 청원심의회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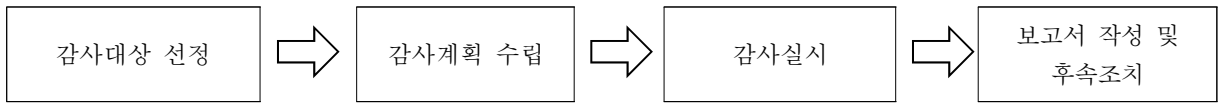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71	190	180	180	1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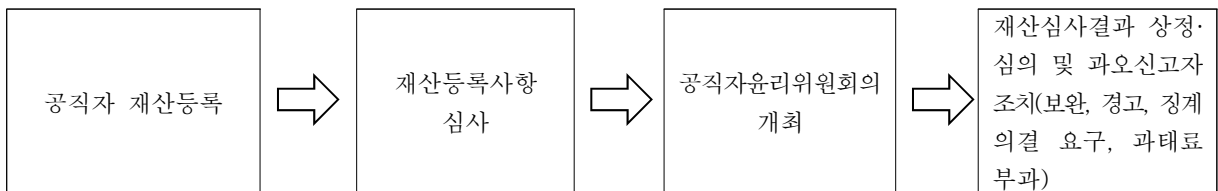
① 감사활동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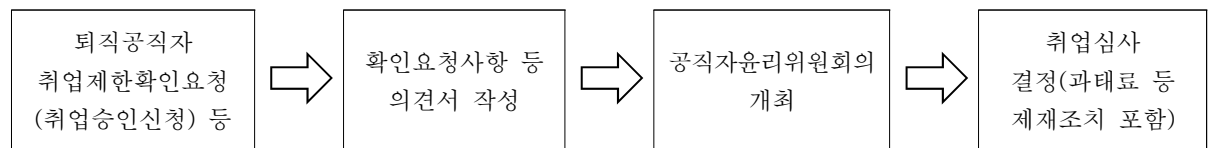
- 감사대상 선정 : 최근 종합감사 미수감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 시기, 감사반원 등 결정
- 감사 실시 :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 감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감사우수공무원 선정·시상, 물의사례 처분

② 공직윤리확립 내역사업

- 재산등록심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 구성 : 총 13명으로 구성(위촉위원 9명, 임명위원 4명),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임명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운영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확인·업무취급 승인 등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

사 업 명
차량및물품관리 (7132-34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9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차량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차량및물품관리	1,459	1,500	1,500	1,565	1,545	45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한 행정장비(차량)의 적기교체로 선거지원 업무능률 제고
-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차량의 교체)
-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조달청 고시 제2021-38호(정수관리 대상물품) 및 제2021-41호(내용연수)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7조의2제1항제7호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73.~)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441	1,520	1,500	1,500	1,5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공용차량, 정수물품 등 교체시기 도래 시 물품 구입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13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0,545	12,828	12,828	20,003	13,957	1,129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용PC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기타 전산운영경비
- (정보통신망 운영개선) 선거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통신망 회선비
- (정보기반보호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및 제14조(복구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05년 : 선거정보통신시스템, ‘12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22년 온라인투표시스템)
- ‘12년 위원회 자체통신망(선거정보통신망) 구축
- ‘13년 재해복구시스템(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16년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 ‘17년 선거정보통신망 고도화
- ‘18년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 ‘20년 선거정보센터 이전(서울시 관악구 → 과천시)
- ‘21년 재해복구센터 구축(대전시 서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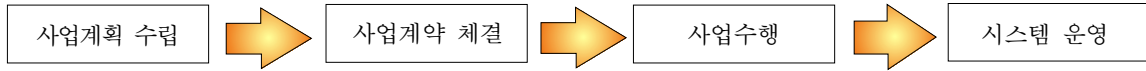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9,238	10,432	10,746	12,828	13,9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및 소속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정보화 업무지침)

-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② 사업계약 체결 : 계약의뢰 및 사업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 업 명
위원회운영 (7132-3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위원회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위원회운영	1,623	1,849	1,849	2,257	2,257	408	2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운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 중앙, 17개 시·도,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운영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2조(위원의 대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제5조(안전검토수당)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정
-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499	1,699	1,849	1,849	2,2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위원회의 개최시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사 업 명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2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연수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연수원운영	1,713	2,076	2,076	2,106	2,106	30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청사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교육·연수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청사관리원(시설관리·환경미화·식당보조)을 채용·관리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비품을 확충·보완하는 사업임
- (교육환경 개선) 동 내역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개·보수 및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교체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선거연수원)

② 추진경위

- ('68. 10.) 준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청사로 사용)
- ('96. 05.) 선거연수원 개원(종로)
- ('12. 12.) 수원청사 재산유상관리전환
- ('17. 11.) 수원청사 개원
- ('17~'18)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
- ('19~'22) 청사단지 정비,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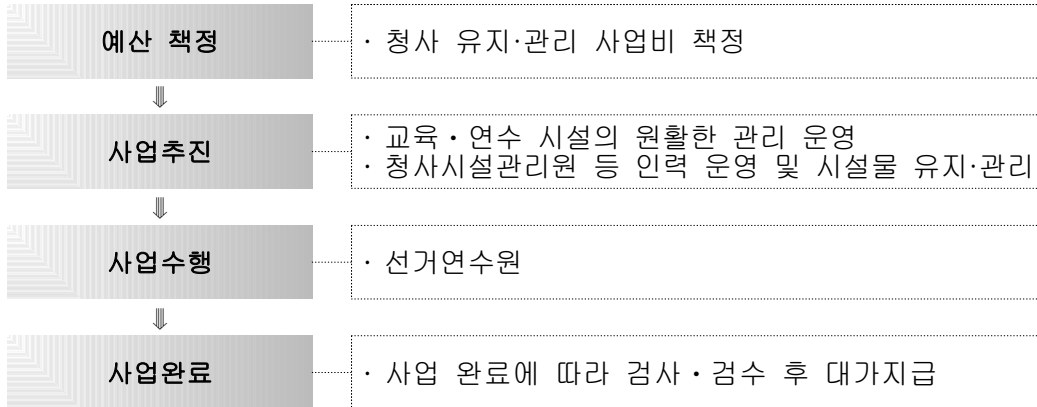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803	3,719	1,923	2,076	2,106

②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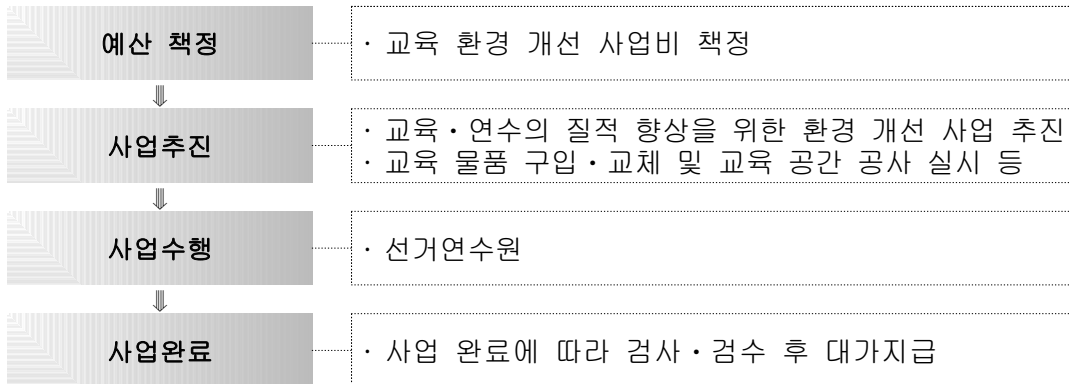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청사 유지·관리



-교육환경 개선



사 업 명
청사관리 (7132-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기획국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청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청사관리	20,683	22,331	22,331	24,539	24,539	2,208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1963년 선관위 창설)
-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 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요원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병역법 제31조, 제75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53조

② 추진경위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적정한 선거업무 환경 조성
- 노후청사 보수로 청사 수명 연장
-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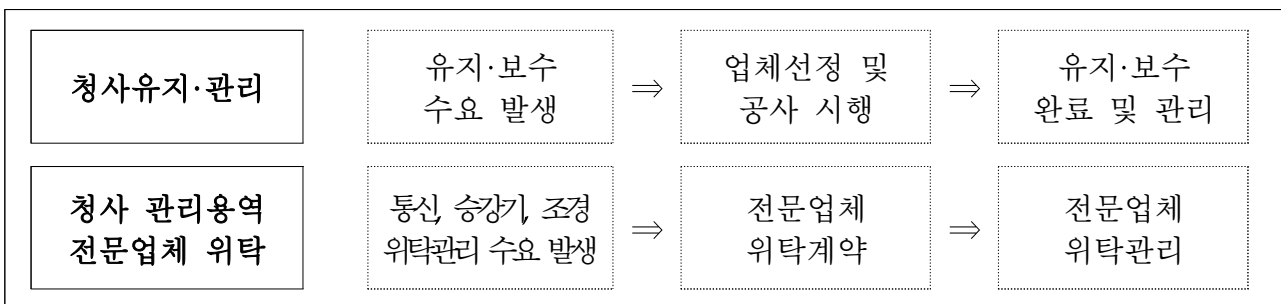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19,890	21,922	21,220	22,331	24,5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공무원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71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0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투개표선진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온라인투표기반조성 (정보화)	482	531	531	2,726	568	37	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투표 도입기반 조성) 온라인투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기타 사업 추진
- (장비 및 시스템 관리) 온라인투표 위탁운영 및 장비 유지보수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주민투표법」 제18조(투표방법 등)
-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10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 「주민소환 관리규칙」 제33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② 추진경위

- ('04. 7.)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5. 11. ~ '07. 8.)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개발
- ('10. ~ '13.)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성능향상(투표기 900대)
- ('13. 10.) KT와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제공
- ('14. ~ '15.) 터치스크린 투표장비 성능향상(명부단말기 590대)
- ('18. 1.) 온라인투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18. 12.) 공공영역 대상 서비스 제공목적 온라인투표시스템 자체구축
- ('19. 10.)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 ('20. 5.)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 ('21년부터 5개년간 추진)
- ('21~'22)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추진(과기부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공단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투표 이용절차
 - 서비스이용신청(이용기관)→협약체결 및 이용승인(관할위원회)→투·개표관리(이용기관)
- 전자투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집행
- 온라인투표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 관리 비용 집행

사 업 명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6-5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2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5,973	6,902	6,902	6,951	6,273	△629	△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선거정보시스템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임.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조성과 장애 사전예방 등을 위해 최신 기술 표준 적용 및 문서 생산·공유 기능 강화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동 내역사업은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사전 투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익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ISP) 수립
- 2008년 :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2009년 : 재외선거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12.)
- 2009년 : 재외선거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12. 24.)
- 2012년 :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29.)
- 2014년 :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5년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8. 13.)
- 2015년 :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12. 24.)
- 2016년 :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7년 :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관리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재·보선 확정상황 공개
- 2019년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마련
- 2020년 : 위원회 개방포털시스템(LOD 서비스 포함) 구축·운영
- 2021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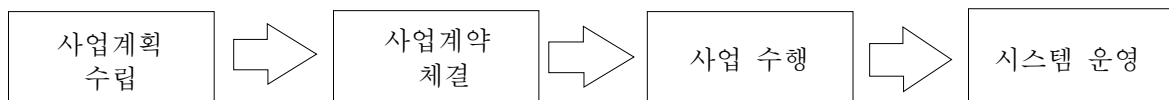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2,843	5,603	6,144	6,902	6,2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



-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② 사업계약 체결 :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검수
-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 업 명
예비금 (7137-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7	43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예비금	예비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예비금	-	260	260	260	26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국회·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
 -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정당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관리활동 경비, 선거대책경비, 대외기관 활동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 또는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족한 경비 등에 활용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백만원)	460	360	260	260	260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측하지 못한 소요, 부득이한 사업추진 소요 등 발생 시 집행 |
|--------------------------------------|